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	
보도 일시	2023. 2. 23.(목) 13:00 < 2.24.(금) 조간 >	배포 일시	2023. 2. 23.(목)
담당 부서	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	책임자	과 장 한상덕 (044-203-5860)
		담당자	사무관 김준철 (044-203-5865)

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

- 산업용·포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피이티(PET) 필름 반덤핑조사에 대한 최종판정
-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해 판정

□ 산업통상자원부 **무역위원회**(위원장 이재민)는 2023. 2. 23.(목) 제433차 회의를 개최하여 코오롱인더스트리(주) 등 4개사가 요청한 **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(PET)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(4차) 건에 대해,**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**향후 5년간 2.20~36.98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**하였다.

○ PET 필름은 산업용(열차단 필름 등), 포장용(라면 등), 광학용(LCD, 편광판 등), 그래픽용(레이저 프린터 인쇄용지 등)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

○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**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('22.5.9.)로부터 12개월 이내**에 덤핑방지관세 **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**하게 된다.

□ 다음으로, 무역위원회는 ㈜비보존제약이 신청한 **「마취크림 상표권 침해」 조사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**하고 **피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**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㈜비보존제약(신청인)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취크림을 수출한 국내기업 **'A사(社)'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*에 해당**한다며 무역위원회에 **조사를 신청하였다.**

* '불공정무역조사법'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

○ 무역위원회는 신청인(㈜비보존제약)과 피신청인('A사(社)')을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, 피신청인의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인의 **상표권을 침해**하였고, 이러한 물품을 수출한 행위가 **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한다고 판정하였으며,

- 피신청인 'A사(社)'에게 시정조치로 조사대상물품의 **수출행위 중지, 재고 폐기처분,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**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**과징금을 부과**하기로 하였다.

□ 한편, 무역위원회는 **중국 및 말레이사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**(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, POY)에 대한 **반덤핑 조사를 개시**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.

○ 이는 국내생산자 단체인 **한국화학섬유협회**가 중국 및 말레이사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의 **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**을 주장하며 **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**를 무역위원회에 신청('22.12.27.)함에 따른 것이다.

□ 또한, 무역위원회는 디비메탈 등 국내산업 3개사가 요청한 **베트남·우크라이나·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***의 덤핑조사(1차 재심) 건과 관련하여, 2.23.(목) 2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공청회는 '22.7.22. 재심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**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**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**투명하고 공정한 판정**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.

○ 이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, **국내생산자**인 **디비메탈, 심팩, 태경산업** 및 **수입관련자인 엠비메탈** 등 **약 30여 명**이 참석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무역조사실 산업피해조사과	책임자	과 장 한상덕 (044-203-5860)
		담당자	사무관 김준철 (044-203-5865) 사무관 나강운 (044-203-5864)
	무역조사실 덤핑조사과	책임자	과 장 이원희 (044-203-5870)
		담당자	서기관 김학배 (044-203-5874 사무관 장진호 (044-203-5873) 주무관 이용욱 (044-203-5877)
	무역조사실 불공정무역조사과	책임자	과 장 황은택 (044-203-5880)
		담당자	주무관 유수민 (044-203-5887)

【참 고】 1.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조사(4차재심) 개요
2.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3. 중국 및 말련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(원심)
4. 베트남,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폐로실리코망간 조사(1차재심) 개요
5. 반덤핑조사(재심) 절차도
6. 반덤핑조사(원심) 절차도
7.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

참고 1 중국 및 인도산 PET 필름 조사(4차재심)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요청인: 코오롱인더스트리㈜, ㈜효성화학, ㈜화승케미칼, 에스케이씨마이크로윅스㈜
* (대리인) 법무법인 와이케이, 우리회계법인 / 요청 접수(기재부): '22.3.9.

○ 피요청인: (중국) 푸웨이, 천진완화 등 8개사 (인도) 진달 등 2개사

○ 요청인 주장 덤핑률: (중국) 36.98%, (인도) 34.90%

○ 재심사 요청물품: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 필름

- **(정의)** 테레프탈산(Terephthalic Acid, TPA) 또는 테레프탈산디메틸(Dimethyl Terephthalate, DMT)과 에틸렌글리콜(Ethylene Glycol, EG) 간 축중합 등으로 얻어진 PET 칩을 면상으로 압출한 후 종횡연신을 통해 일정한 두께와 물성을 부여한 필름
- **(용도)** 산업용(열차단 필름, 접착테이프 등), 포장용(스낵, 등), 광학용(LCD, 편광판 등), 그래픽용(레이저프린터 인쇄용지 등)
- **(분류)** 관세품목분류번호(HSK) 3920.62.0000, 3920.69.0000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시장 규모('21년): 약 9,000억원대(약 300천톤대)
* 시장점유율: (국내생산자) 60%대, (중국산) 10%이내, (인도산) 0%, (기타국산) 20%대

□ 공급자별 최종 덤핑방지관세율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관세율
중국	Tianjin Wanhua Co., Ltd.('천진완화')	3.84%
	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., Ltd.('캉훼이')	2.20%
	Fuwei Films Shandong Co., Ltd.('푸웨이')	36.98%
	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., Ltd.('산토우')	36.98%
	Yihua Toray Polyester Film Co., Ltd.('이화도레이')	36.98%
	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., Ltd.('장수중다')	36.98%
	Zhejiang Wuming Trading Co., Ltd.('저장우밍')	36.98%
	TSF Co., Ltd.('티에스에프')	36.98%
	S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., Ltd ('상하이')	36.98%
	그 밖의 공급자	36.98%
인도	Jindal Poly Films Limited('진달')	34.90%
	Garware Polyester Limited('가웨어')	34.90%
	그 밖의 공급자	34.90%

□ 조사 진행현황

○ 재심사 요청접수('22.3.9.) → 재심사개시 결정('22.5.9. 기재부) → 이해관계인회의('22.9.7.) → 공청회('22.12.15.) → 이해관계인회의('23.1.4.) → 최종판정('23.2.23)

참고 2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

□ 조사신청 개요

○ (신청인) ㈜비보존제약

○ (피신청인) 국내기업 A

○ (조사대상물품) 마취크림

* 국소마취제로서 간단한 미용목적 시술시 통증감소 용도 등으로 소비

신청인의 등록상표 1	조사대상물품 사용상표
• 제1497713호	
신청인의 등록상표 2	
• 제1571970호	

□ 조사 경과

○ 조사신청서 접수('22.6.21.), 조사개시결정('22.7.5.)

○ 서면조사('22.7~'23.2월)

□ 조사 결과

○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마취크림을 해외에 수출한 바,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

참고 3 중국 및 말련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(원심)

□ 신청 개요

○ 신청인: 한국화학섬유협회(성안합섬(주), ㈜티케이케미칼)

* 대리인: 법무법인 화우 정동원 변호사, 김현수 회계사

○ 신청일 : '22.12.27.

○ 조사신청물품 :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(POY, 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)

○ 공급자 : 중국 Xin Feng Ming(신펑밍) 등 7개사,
말레이시아 Recron (Malaysia) sdn. BHD.(레크론) 1개사

○ 신청인 주장 덤핑률 : 중국 16.8%, 말레이시아 16.1%

□ 조사개시 결정내용

○ 조사대상물품 :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(POY, 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)

- (조사범위) 테레프탈산(TPA)과 모노에틸렌글리콜(MEG)을 중합(重合)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사로서 부분적인 연신이 이루어진 제품이며, 추가적인 연신·가연(False Twisting)이나 다른 섬유와의 혼합 등 추가 가공이 필요한 반제품 내지 중간제품

- (관세품목분류) HSK 5402.46.9000

*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, 조사대상물품의 범위,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

○ 조사대상기간: (산업피해) '18.1.1.~'22.12.31., (덤핑률) '22.1.1.~'22.12.31.

○ 조사대상자: 국내생산자, 수입자, 수요자, 유통업자, 해외 공급자

□ 향후 일정

○ 예비조사 ('23.7월까지 예비판정 예정) → 본조사 및 공청회

참고 4 베트남,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조사(1차재심) 개요

□ 요청 개요

○ 요청인: (주)디비메탈, (주)심팩, 태경산업(주) 3개사

* (대리인) 법무법인 (유한)지안, 현대회계법인

○ 피요청인: 베트남 엔알엠, 우크라이나 니코폴, 인도 안자니 등 5개사

○ 재심사요청물품: 페로실리코망간(Ferro-Silico-Manganese)

- **(정의)** 주요 원재료 광석인 망간, 규석 등과 환원재인 코크스 등을 배합하여 고온으로 용융하고, 이를 배출하여 응고시킨 후 파쇄하여 생산되는 철(Fe)과 망간(Mn), 규소(Si) 등이 합금된 합금철
- **(용도)** 철강 생산과정에서 산소,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, 철을 더욱 단단하게 하거나 진동, 소음을 줄이는 등 부원료로 사용
- **(분류)** 관세품목분류번호(HSK) 7202.30.0000
 * 기본관세율 5%, 한-베 FTA 0%, 한-인 CEPA 0%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시장 규모('21년): 약 3,700억원(약 230천톤)

* 시장점유율: 국내산 약50%대, 베트남 5%이내, 우크라이나 0%, 인도 5%이내, 기타 약40%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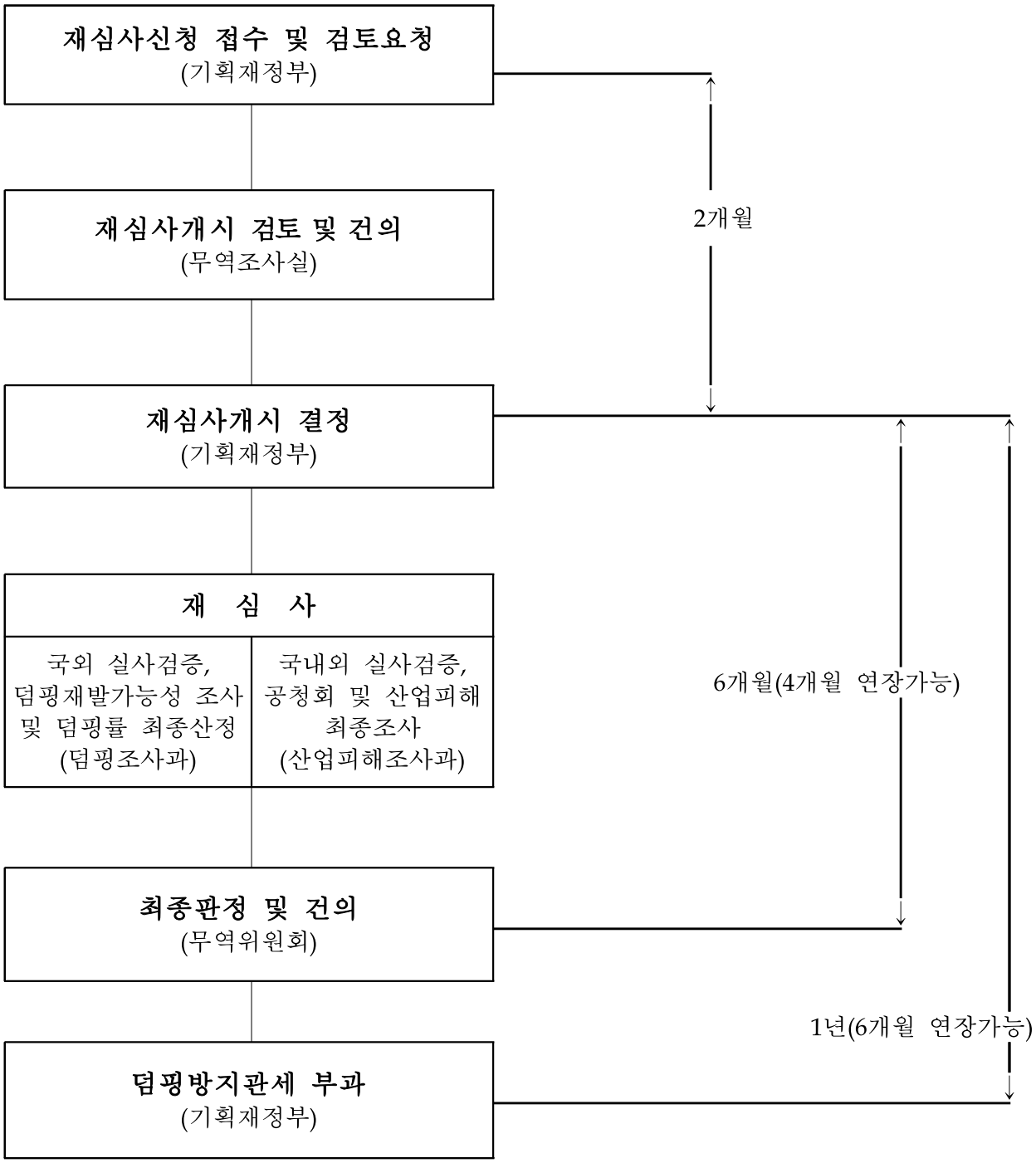
□ 덤핑방지관세 부과현황

공급국	공급자	덤핑방지 관세율
베트남	Hai Duong New Resources Metallurgy Shareholdings Company(엔알엠)	4.06%
	그 밖의 공급자	4.06%
우크라이나	PJSC Nikopol Ferroalloy Plant(니코폴)	19.06%
	그 밖의 공급자	19.06%
인도	Anjaney Ferro Alloys Limited(안자니) 및 그 관계사	11.04%
	Indsil Energy and Electrochemicals Private Limited(인드실 에너지) 및 그 관계사	7.48%
	Mortex Group(몰텍스)	19.06%
	그 밖의 공급자	11.0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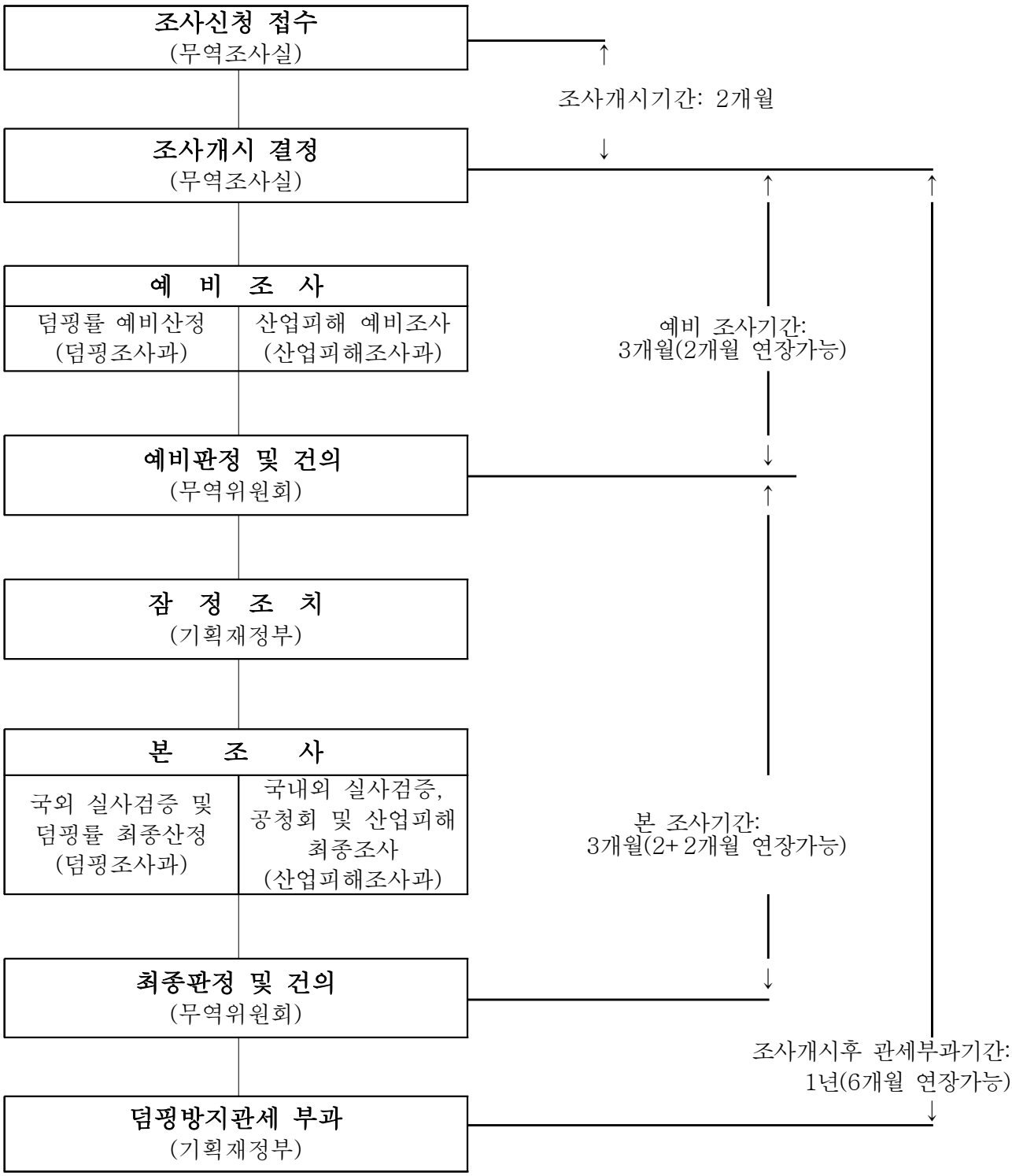
□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

○ 재심사 요청접수('22.5.25.) → 조사개시('22.7.22.) → 이해관계인회의('22.11.3.) → 공청회('23.2.23.) → 최종판정('23.5월 예정)

참고 5 반덤핑조사(재심) 절차도



참고 6 반덤핑조사(원심) 절차도



참고 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

